

| 박형준 / 5월 / 기출 GS / 4회 | | | | | | | | | |
|-----------------------|------|------|------|------|-------|----|---------|--------|------|
| 수강번호 | 문제 1 | 문제 2 | 문제 3 | 문제 4 | 문항 총점 | 석차 | 상위% | 가독성 평점 | 응시인원 |
| 541756 | 17.5 | 11.5 | 13.5 | 8.5 | 51 | 1 | 3.23% | 5 | 31 |
| 541730 | 14.5 | 10.5 | 13.5 | 7.5 | 46 | 2 | 6.45% | 5 | |
| 542771 | 16 | 11 | 11.5 | 3.5 | 42 | 3 | 9.68% | 5 | |
| 542783 | 12.5 | 9 | 13.5 | 6 | 41 | 4 | 12.90% | 5 | |
| 542750 | 11.5 | 9 | 13.5 | 6.5 | 40.5 | 5 | 16.13% | 3 | |
| 542796 | 13 | 7 | 11 | 9.5 | 40.5 | 5 | 16.13% | 4 | |
| 541742 | 11.5 | 8.5 | 11.5 | 8 | 39.5 | 7 | 22.58% | 5 | |
| 542777 | 11.5 | 10 | 13 | 5 | 39.5 | 7 | 22.58% | 5 | |
| 542869 | 9 | 9 | 13 | 7 | 38 | 9 | 29.03% | 5 | |
| 542784 | 10 | 8 | 13 | 6 | 37 | 10 | 32.26% | 5 | |
| 542870 | 9.5 | 9.5 | 11.5 | 6.5 | 37 | 10 | 32.26% | 5 | |
| 542778 | 10 | 6 | 11 | 9 | 36 | 12 | 38.71% | 5 | |
| 542098 | 12.5 | 7.5 | 9.5 | 6 | 35.5 | 13 | 41.94% | 5 | |
| 542835 | 10 | 9 | 10.5 | 6 | 35.5 | 13 | 41.94% | 6 | |
| 542805 | 10 | 8 | 13 | 3.5 | 34.5 | 15 | 48.39% | 5 | |
| 535255 | 9 | 7.5 | 14 | 3.5 | 34 | 16 | 51.61% | 5 | |
| 541771 | 13.5 | 10.5 | 14.5 | 7.5 | 32.5 | 17 | 54.84% | 4 | |
| 541782 | 9 | 7.5 | 10 | 5.5 | 32 | 18 | 58.06% | 4 | |
| 542806 | 7.5 | 6.5 | 9 | 9 | 32 | 18 | 58.06% | 5 | |
| 542892 | 10.5 | 11 | 10.5 | 0 | 32 | 18 | 58.06% | 6 | |
| 542015 | 10 | 8.5 | 9.5 | 3 | 31 | 21 | 67.74% | 4 | |
| 542816 | 9.5 | 8 | 9 | 4.5 | 31 | 21 | 67.74% | 5 | |
| 542914 | 10 | 8.5 | 12 | 0.5 | 31 | 21 | 67.74% | 4 | |
| 542866 | 9.5 | 9 | 12 | 0 | 30.5 | 24 | 77.42% | 4 | |
| 541736 | 11 | 6.5 | 8 | 4.5 | 30 | 25 | 80.65% | 5 | |
| 542785 | 9.5 | 2.5 | 11 | 6.5 | 29.5 | 26 | 83.87% | 5 | |
| 542799 | 7.5 | 7.5 | 9 | 3 | 27 | 27 | 87.10% | 5 | |
| 542790 | 10 | 3.5 | 11 | 2.5 | 27 | 27 | 87.10% | 4 | |
| 542786 | 9 | 7.5 | 6 | 0 | 22.5 | 29 | 93.55% | 4 | |
| 542844 | 8 | 8.5 | 4 | 0 | 20.5 | 30 | 96.77% | 5 | |
| 542688 | 11 | 2 | 0 | 0 | 13 | 31 | 100.00% | 5 | |

| | |
|---|-------------------|
| <p>박형준/5월/기출GS/4회/1번</p> | <p>채점자</p> |
| | <p>윤영우</p> |
| <p>1. 전반적인 총평</p> <p>비교적 문제가 길어, 누락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히 문제를 읽어주셔야 합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신규성, 진보성, 자유실시기술 별로 판례와 타당 여부를 알맞게 작성하신 경우 만점을 드렸습니다.</p> <p>분량이 5점으로 3가지 논점을 작성하기에는 배점이 적으므로 분량을 조절해주셔야 합니다.</p> <p>판단할 수 있는지 물어봤으므로 실제 신규성, 진보성 구비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p> <p>(2) 설문 2</p> <p>공지에외주장과 자유기술의 항변 논점을 누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p> <p>자유기술의 항변이 불허되므로 선사용권 및 중용권을 검토하는 흐름이 논리적으로 보입니다.</p> <p>(3) 설문 3</p> <p>다들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p> <p>(4) 설문 4</p> <p>심판 1과 심판 2에 해당하는 판례를 반대로 작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p> <p>심판 1은 실시 예정이 없는 발명, 심판 2는 장래 실시가능성이 있는 발명을 다루고 있으므로, 각 경우를 구별하여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p> | |

3. 소결

1문의 경우 논점 누락 또는 논점 이탈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수하신 부분은 기본서나 판례집에 표시해 두고 반복해서 복습해 주셔야 합니다.

| | |
|--|-------------------|
| <p>박형준/5월/기출GS/4회/2번</p> | <p>채점자</p> |
| | <p>윤영우</p> |
| <p>1. 전반적인 총평</p> <p>각 설문이 제각기 다른 논점을 다루고 있는 문제였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제52조 4항의 개정법을 작성해야 하는 설문이었습니다.</p> <p>분할출원 A에 대하여 분할출원 B를 한 것이므로 분할출원 A에 대하여 먼저 우선권 주장 절차를 밟은 것이 간주된다고 작성해주셔야 합니다.</p> <p>(2) 설문 2</p> <p>대부분 잘 암기하고 있을 논점으로, 다들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p> <p>사안 포섭을 함에 있어 원시적 이행불능 여부 또는 실시계약 자체의 무효사유 유무를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p> <p>추가적으로 실시권자의 무효심판 청구적격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논점을 작성하신 경우에도 점수를 드렸으나, 메인 논점은 아니므로 길게 작성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p> <p>3. 소결</p> <p>비교적 무난하여 다들 정답을 잘 맞춰주셨습니다.</p> <p>내용 공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답안을 작성할 때 강약 조절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메인 논점은 두껍게, 서브 논점은 가볍게 치고 넘어감으로써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p> | |

| | |
|--|-------------------|
| <p>박형준/5월/기출GS/4회/3번</p> | <p>채점자</p> |
| | <p>윤영우</p> |
| <p>1. 전반적인 총평</p> <p>권리 소진과 침해 관련 논점으로 구성된 문제였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구매 행위 검토를 누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구매 행위가 실시행위가 아니므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출제된 적이 있으므로 문제에 “구매” 키워드가 나오면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 드려요.</p> <p>(2) 설문 2</p> <p>국제적 소진 인정 여부를 물어보는 설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학설, 판례, 검토는 암기해 놓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p> <p>(3) 설문 3</p> <p>마찬가지로 구매 행위 검토를 누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p> <p>재판매 금지조건 위반 논점의 경우에도 학설, 판례, 검토를 암기해 놓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p> <p>(4) 설문 4</p> <p>제작, 납품 행위와 검수, 시연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판례와 함께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재실시 허락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누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p> <p>설문 4와 같이 다논점으로 구성된 문제의 경우 논점을 누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주셔야 합니다.</p> | |

3. 소결

다들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4문 풀이에 10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 관리에 유의해 주세요.

| | |
|--|-------------------|
| <p>박형준/5월/기출GS/4회/4번</p> | <p>채점자</p> |
| | <p>윤영우</p> |
| <p>1. 전반적인 총평</p> <p>甲의 청구항이 PbP 청구항인지 캐치하지 못한 경우가 몇몇 있어 보였습니다. 청구항에 제조방법이 포함된 경우 PbP 청구항이 논점이 됨을 짚고 넘어가 주세요.</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일반 청구항의 해석방법만 작성한 경우가 많았는데, 甲의 제1항, 제2항은 PbP 청구항이므로 PbP 청구항의 해석방법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p> <p>청구이유의 경우 답안과 같이 주위적 주장과 예비적 주장으로 나누어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 주세요.</p> <p>(2) 설문 2</p> <p>乙의 입장에서 청구이유를 작성하는 것이므로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내용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다고 작성한 경우 설문의 취지에 맞지 않아 보였습니다.</p> <p>(3) 설문 3</p> <p>신규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는 다들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다만, 사안 포섭의 경우 판례의 키워드를 포함하여 좀 더 두껍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p> <p>3. 소결</p> <p>이번 주도 답안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p> | |

3.5

[문제 1]

[답(1)]

1. 특허권 침해행위 특이성판 (최대 35점)

강이·상국간 분쟁 해결을 위한 계약 체결 후 특허대상발명이 특허권명 권역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권리 행사를 계속
상당하다.

2. 甲 특허권명 신규성 판단 기록(23점)

(1) 공개기록 제외 범위 (최대 11점)

특허권명이 공개기록에 대한 이루어진 계약은 무효성권 특이성
제이나도 권리범위에 인정할 수 있다.

(2) 선문의 경우

권리범위확인 상당하다 甲 특허권명 신규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3. 甲 특허권명 진보성 판단 기록(23점)

(1) 권리범위 확인상당하다 특허권명의 진보성 판단 기록(최대 11점)

권리범위 확인상당하다 특허·권리·무효성권 가능 약화 고려하며
공리개념에 비해 진보성이 부합하는 경우까지 특허
될 수 있고, 진보성도 판단할 수 없다는 답이다.

(2) 선문의 경우

甲 특허권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4 특이대상반영이 개시된지 기준 따른 거부 (각각)

(1) 개시된지 기준 반영 (특이)

특이대상반영이 공리기준인 이유라거나, 특성이 개시된 공리기준보다 늦게 반영될 수 있다면, 특이반영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려 않는다.

(2) 내용의 경우

특이반영의 원리 2의 특이대상반영이 개시된지 여부를 신규성·진보성 검토하여 판정할 수 있다.

7.5 II 내용 (2)

1. 공리예외규정의 통과

(1) 공리예외규정 (특30)

반영 후에 출원 및 출원된 후 개시, 소정 기간 하에 자기 반영 공리를 비공개 반영 간주한다.

(2) 특수 공리사항에 대한 공리예외규정 (특30)

특수 공리 사항에 대해 공리예외규정 적용해야 하지만, 최근 공리예외규정에 대해선 공리예외규정 적용과도 ① 동일성이 인정되는 반영 ② 밀접한 관련 있는 반영 ③ 통상 반영되는 경우 공개 행위에도 인정되어 이른다.

(3) 특허 공리예외규정의 경우

1) 관련된 양자택 하나 내지 둘만 공리예외규정 적용된다면, 특허 채형행위, 불특정 개시까지 동일성이 인정되는 반영으로

이상이 아닌 공작권이 권리자의 주장권이 있다.

2) 2의 양자 쌍안. 판매로 인한 공작권도 甲 반정의
동일성 있는 반정의므로, 공작권이 주장 권리가 아니다.

2. 공작권의 권리자에게 기한 라지권자에게 행한 거부

(1) 권리자에게 행한 거부

1) 권리자에게는 선취권. 상설. 권리는 제3자 권리 행태하지 않는 방식
이러한 인정되는 것으로, 이에 기한은 라지권자에게 행한
인정받는다.

2) 제3자에게는 아닌 권리, ① 선취권. 상설. 권리는 권리 제3자
타는 제3자도 권리 행태하지 않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② 제3자 복하는 제3자. 권리. 인정에 대한 선취권. 상설. 권리로
이러한 권리 제3자 행태하지 않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으로
제3자 인정. 복하는 선취권. 상설. 권리로 인정받는다.

3) 권리를 유권자에게 행할 수 없는 권리를 복하는 것은
반정의지만 한때 주장하지. 이같이 기한 공작
권. 특허권. 상설. 권리는 권리 제3자 행태하지 않음으로 인정받는다.

(2) 권리의 거부

2의 권리 공작권이 주장 권리가 타는 권리. 권리. 권리
대하여 라지권자에게 행한 거부 받을 수 있다.

3. 2의 실시행위기 심사청구 중립된 범위 유추각부

(1) 심사청구 (선출 163)

상호관련된 발명 및 산업상 이용 가능한 범위, 청구된 2 발명
영역 또한 국내에서 실시. 원어문헌 중의 2개에 한정되는
문제의 범용성이다.

(2) 중립적 (선출 104)

상호관련된 발명 및 산업상 이용 가능한 범위, 2개 특허권
복합적인 원어 영역 또한 범용성 있다. 원어문헌 중의
2개에 한정되는 유추 범용성이다.

(3) 심사청구와 중립적 유추범위 관계

1) 두 범용성만으로 특허권이 소용도에 대해 실제로
실시되는 경우 원어문헌 2개에 한정되는 것이 중립적.

2) 하위적으로, 산업상 이용 가능한 범위, 공적에 주어진
2개영역 또한 청구된 실시한 2개에 대한 심사청구
중립적 범위를 유추할 필요가 있다는 정제가 있다.

4. 실용의 범위

공적에 대한 2의 범용성, 심사청구와 중립적
범위 유추성이 실질적으로, 실용적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35

특수 (4)

1. 소극적 권리행사 확인 상당의 각별한

(1) 청구인 권리 - 이해관계인 (취소)

1. 특허권의 권리 행사를 할 때 업무상 원천을 인민에게 유출
있는 자로서, 특허법령의 강령 원천을 제공한 자로서 2번 이상
제출된 자라도 인정된다.

2. 장래 권리 처럼인 자도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된다.

(2) 특허대상업종 대상업종

장래 권리주인 발명권 뿐 아니라 장래 권리처럼인 발명권도
가능하다.

(3) 확인의 이익

권리행사 후유지 가중이 있어 특허취급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 이익 인정된다.

2. 상당 1의 권리

1) 발명권도 실시하지 않기로 하여, 장래 권리 확인 이익
있다.

2) 장래 권리 처럼도 아니므로 2의 청구인 정복과
특허대상업종의 대상업종도 부정된다.

3. 상당 2의 권리

1) 개별적으로 한 Y 발명이 가능하므로 전체로서는 실시가능하여
장래 권리 처럼이므로 인정된다.

2) 개별적으로 한 Y 발명이 실시가능하다면 확인 이익이



부정된다.

[문제-2]

1. 선출

1. 국내 우선권 규장의 절차적 요건 (선출 2)

특허청에서 처리의 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2. 불합격자와 우선권 규장 관련

(1) 불합격자 처리 (선출 2)

최초 명세서에 특이성이 반영이 반영된 장에 대하여
초청으로 불합격 것이다. 명세서 부족, 반영 안되어 재청제 등
기해 인정된다.

(2) 불합격자의 재청 (선출 2)

각각의 불합격 사유는 처단인이 명세서로 인정된다.

(3) 불합격자의 우선권 규장 관련 (선출 2 4)

처단인도 소급하지만, 국내 우선권 규장 절차에 대해서는 불합격명
에 한수 있다.

3. 불합격자의 우선권 규장 자동인정 제도 (선출 2 4)

(1) 개념

최초 명세서에 특이성을 갖춘 발명이 다량태
것을 막기 위해 인정한 각각의 우선권 규장이 (선출 2 4)
있는 경우에는 불합격제도 우선권 규장이 있는 것은



간주한다.

2) 선택의 경우

1) 발명자인 A

출원일인 2022. 1. 20 이전에 이미 공지된, 명세서인 PCT출원이 선행에 대한 우선권 주장이 인정하므로, 발명자인 A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이 간주된다.

2) 발명자인 B

1) 발명자인 B가 먼저 발명하면 B가 발명자이므로, 발명자인 A로부터 발명자인 B로 발명권이 이전 받는다.

2) 발명자인 B가 출원일인 2022. 1. 20으로 공지된 발명자인 A의 발명인 발명자인 A에 우선권주장이 간주되므로, 발명자인 B에 대해서도 우선권주장이 인정된다.

4. 선택의 기점

발명자인 A와 B가 우선권주장의 취지 및 선택된 기술을 하기 발명에서는 우선권 주장 자동인정제도 (선 529)에 의해 우선권 주장이 인정된다.

II. 식문(2)

1. 무효판결의 취지



(1) 무효판정 대외. 제1 (제133)

공익상 필요에 있어 특허를 소멸 인정하는 수단이.

(2) 무효판정의 효과 (제133③)

특허권이 소멸 인정되며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없다.

2. 실용신안 제133 조 무효판정 특성이 실용신안 유효판정

(1) 실용신안 유효판정 (제133조)

무효판정의 인정에 따른 부수하고, 실용신안 제133 조 무효판정이 인정된 경우, 실용신안이 제3자에게 취득한 권리는 특허 무효의 비례로 한정해야 한다.

(2) 특허 실용신안 이행부수 규정 (제133조)

무효판정 특성이 인정된 특허권은 실용신안 제133조에 따라 권리를 취득할 수 있고, 이의 권리를 특허권이 제3자에게 취득한 경우 실용신안 유효판정이 인정되면 무효판정 특성이 인정된 제3자가 이행부수가 인정되어야 한다.

(3) 이의권 부여 청구 가능 (제133조)

따라서 특허권은 특허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 이의권 부여를 청구할 수 있고, 이는 권리상충이 아닌 권리행사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권리

특허 무효의 소멸은 특허권자의 권리에 대한 공익상 ^{부수}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이고, 실용신안권이 다른 사람이 취득하게



이 가지 인용으로 기록된다고 하기 위하여 작성에 대응한다.

3. 실용의 범위 - 甲의 실용적 범위

1) 甲의 특허가 대한 실용적 범위에 원래 이행하는 바탕으로 다른 무효사유가 생기지 않으나, 무효사유가 발생되면 그때부터 이행범위가 바뀐다.

2) 甲은 대한민국 등 특정 국가에 특허 유한하게 권리를 가진 국민의 기득권 실용을 창조 수 있다 는 것이 아니 다.

끝

[문제-3]

I 실용 (1)

1. 실용의 종류

특허법상 실용의 범위는 한정이 없어서 둘의 구분이 없다. 사실상을 따라 판단 하는 것이다.

2. 둘의 구분

(1) 방법 발명의 실용 (법 2(3) 바탕)

방법 발명은 내용 자체, 어떻게 창조 하는 것이다.

(2) 둘의 구분 대응

1) 구분 대응은 방법 발명의 실용이 아니 다.

2) 둘의 구분 이와 연한 구분은 방법 발명의 실용 (법 2(3) 바탕)

이와, 방법 발명은 둘의 구분 대응은 방법 발명 실용에 연한 구분

II (18)(2)

1. 권리권 이론

원래의 권리권 이론 및 개량권 이론, 특허권과 발명권에
이하여 특허권이 권리인 각본에 대한 권리가
당시 법원에 대해서 특허권은 물론 인정되어 인정되는
권리의 법이다.

2. 권리권 인정론의

(1) 주장

- ① 권리권은 원래의 권리권 이론에 주장하며,
- ② 부당론은 특허권은 이권 즉대하에 대해 적용된다.

(2) 취지

하층권 권리에이 권리권 인정론 인정론 인정론
대법원 인정론 인정론이다.

(3) 결론

권리권 인정론에 의해 특허권의 범위가 확대 확대되었
다면 권리권 해명권 인정론이 권리권 인정론이
다양하다.

3. 실용의 해명

- ① 실용의 해명권은 권리권 인정론에 의해 인정론
학제권, ② 법원에 의해 인정론으로
- ③ 권리 인정론 인정론 인정론 권리권 인정론 인정론
다양하다.

II. 25 (3)

1. 2차 30개월

상업실행의 실행대상이 아니므로 甲 특이한 특징이 이르기
않는다.

2. 1차 48개월

(1) 1차의 개산 항목이 변한 2차의 개산 (특이)

이항법 사용이다, 상충권한 적법하게 상충을 보충한 문장이
1차의 개산 항목을 2차의 개산 항목으로 변경하였으나 특이한 특징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2 차의 개산 항목에 차가 없으며
하루이다.

(2) 개산

특이한 특징의 양도가 개산 대상이 되었으나
2 차의 개산 항목은 양도 이후의 사항이고, 권리권
인정권이 없으며, 양도 적법하게 양도받은 권리인양도
받은 것이 타당하다.

(3) 개산

1) 2차 개산에 권리 권능 위배하여 1차에 개산하였으나

1차에 특이한 특징이 이르기
않는다.

2) 1차 2차에 계약책임은 둘도 여부가 없다.

35

IV 원문 (4)

(1) 상법상행위 기권행위해야함

(1) 기권행위 (2차(2))

각종행위 기권행위이러한 행위 기권행위 중 행위를 정지할 권유하여 받은 권유를 거부한 것이다.

(2) 상법상행위 정지 (상(2)(2)) (권행동)

상법상행위 정지이러한 행위로 행위를 정지하여 행위를 중단 또는 하는 행위이다.

(3) 권리 정지

다른 권리 X의 이익을 위하여 권행동인 행위를 기권하여 정지하였고, 기권행위로 정지하였다. 기 기권행동 행위는 권행동은 정지한 것으로, 특히권 재한 내지 있다는 문래된다.

2. 상대방에게 재지에게 권행동은 내용상인 상대방 정지

(1) 정지권 행위

i) 특히권상인 상대방에게 재지에게 권행동 기권은 이러한 상대방은 정지 상대방에 행행동수 없이 특히권상인 특행동 이익이 새롭게 행행동되도록 하기 하였다.

ii) 재지에게 정지를 권행동행위하고 (정지 상대방이 부양행 제약이러 특히권이 보행행 특행행이다.

(2) 정지권 정지

i) 재지라는 이러한인 상대방에게 권행동은 정지 양도권

3. 식물의 재결 - 이유

(1) 2차법 재결

1) 물건 A를 2차법이며, B방법으로 특허권을 주요 실권을 갖
게한 때 P를 특허한다.

1) 명세서 불완전한 야청도 보이기 않는다.

(2) 1차법 재결

특허대상 발명물은 A의 하위개념인 A를 2차법이며 B방법이
특허권을 주요 실권을 갖 게한 때 P를 특허하는 바, 회색 선
만 가지 1차법에 속한다.

3.5

1. PBP 제2항 특허권 재결방법 (유예)

1) PBP 제2항의 발명의 대상은 최종 발명인 물건이고,

2) 1차법 발명인 특허권 밖에 있는 야청이 있더라도

공개되어, 기안된 2차법은 1차법 발명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1차법 발명의 기재를 포함하여 회색선 만의 기재로

특허권을 주요 실권을 갖 는 물건에 해당해야 한다.

2. 2차 이유

(1) 회색 선의 특허권 재결대상

물건 A를 2차법이며 1차법으로 특허권을 실권을
갖게 한 때 P를 특허한다.

(2) 상징발명이 특징

특정 A를 구성하며 C방법으로 특징되는 구조 상반을 갖는
체계를 특징된다.

(3) 대비예외

1) 신규성이 부정되는 경우

상징발명과 특허발명이 특정상반 차이를 보이고
상반으로 동일하며 대비 차이가 존재하는 한이면
신규성이 부정된다.

2)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상징발명이 체계에 이르기까지 특허발명 체계에
비하여 효과가 뚜렷, ^{특정}상반을 얻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면 진보성이 부정된다.

(4) 신규

특정상반이 진보하다 하여 신규한 것이 진보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아니다. 특정상반이 특정 체계에
영향이 있고 특정상반 체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상징발명에 대해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다.

2. 4월(3)

1. 인공성 판단기준 - 숙련도 동인성(숙련)

숙련이 하이기 쉽다, 관련분야에 대한 숙련이 되기
 주위전문가들이 복제성에 반증에 대비 있고, 내린
 판단기준은 모든 미숙한 단계에 불리하다면
 양심적으로 동인성

2. 고위이유

양심적으로 숙련분야에 특화하면서 0 숙련도 수준이
 하이기 쉽다, 결국 양심 불충분하게 내린 권리
 범위로 모든 미숙한 단계에 불리하다 양심이 부족하다

35 [문제 1]

1. 선부성권장기법 - 권부

(1) 권부제한 제외 범위 제외

특정권시 공제공용인 특허발명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2)사안.

부발명의

권리범위 확인실질은 선부성여부 판단가능하다

2. 선부성권장기법 - 소

(1) 특정권 제외

권리범위 확인실질에서 부발명인 선부성 인정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 본질이 맞지않고 부발명가능 확대시연
된다 있으나 공제기준 제외 범위를 특정권 불기대고 권부

(2)사안.

권리범위 확인실질은 부발명의 선부성여부 판단
불가능하다

3. 자유형식기법 권장기법 - 소

(1) 제외

선부발명의 특정한 공제공용이 아닌 이로부터 동종의
기술에 의하여 실시가능한 경우 특허발명의 본질



법원에 제기 가능한 점.

2) 시간.

권리침해 확인신청은 권리 발생 시나 그 후로서 기판에 관한 가능하다

3) 소송의

1. 부족권

1) 선제공권 (제102조)의 위헌적

선제공권 또는 선입권이 본 취미 완성권 해제 부양의 생식권은 부여한다.

2) 중정권 (제103조)의 위헌

선입권이 본 취미. 완성권과 동시에 부양의 생식권은 부여한다.

2. 부족권-유족직영 권유성

① 그로 부의공회 행위로 기르르. 안해 (AT/STC)는 보장한다 ② 후에 부이 공회행위에 주성이 권리 침해 설비가 보조하여야 할 권유성이 있어 승의권이다.

3. 선제공권 유족직영기유 - 소극

1) 판. 호판

① 중정권 주제에 상해 원시시행 권리 시행 해제금



2. 호다. (제553 조항)

최초 명세서로써 기재사항이 기재 신청권은 권리자만이
유지된다.

3. 권리법적 지위 - 실물의 해탈

1) 권리청구 행위 불가.

그의 권리청구권은 기발하여도. 침해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원권 청구 불가

특히 원권 청구 해지권은 권리 침해로 인정된다.

3) ~~부동산~~ 권리법위에 권리 침해 여부

그 침해 발생은 그의 권리법위 내이다

4) T 권리권 - 건물 보상을 청구 가능

보상 청구권 (제653 조항) 인정된다.

5) T 권리권 - 건물 침해지

침해자의 지위에 있다

4.5

2) 실물(4)

1) 권리법위 확인사항 (제 653 조항) 권리 침해

권리 침해는 분쟁 예방 권리법위 권리법위 취득 공적권에
관계는 제외된다.

2. 선택의 경우

(1) 이해관계인 위계

특히권자로 부터 권리대상물인 물건이나 부동산에 대한 우선권이 있는가 이해관계인이다

(2) 변형 위계

경제상의 용이나 장래 인식대상인 변형권은 특인의 이익이 있다.

(3) 시간

① 권리 또는 실사권 예외가 없는 변형권 ② 권리 취득대상물명으로 하는 경우 ③ 특인의 이익이 존재 하고 ④ 부속법령 상권 취득이다.

3. 선택의 경우

(1) 실사가능성 위계

실사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선택} ~~변형~~은 관련해야 한다고 하고 ② 실사가능성이 없는 경우 특인의 이익이 있다고 한다.

(2) 시간

① 어느 차례에 작성되어 실사가능한 변형으로 ② 실사가능이 존재한다 ③ ~~법령~~ ^{법령} 상권은 실사가능한 권리이며 실사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인 이익이 ④ 부속법령 상권 취득으로 한다.

4. 선행의 범위

① 선행이란 청구의 이익이 ② 선행인 것은 특별히 실시 가능성이 존재한다.

55

[문제 2]

1. 청구 (a)

1. 발명 권리 (제 52조) 위치

특정인 권리 위치 권리명에서 3면 범위에서 변경의
가능성 존재 가능

2. 권리 주장 (제 55조) 위치

개량 발명 권리 위치 권리명에서 3면 범위에서 변경 가능
소유 시켜 준 제문이다.

3. 권리 주장 청구 개 - 29

(1) 권리 주장

청구에는 발명 권리 ~~가~~ 권리명에서 권리 주장
가능성 ~~은~~ ~~은~~ ~~은~~ 발명권에서 권리 주장
해당 권리인 발명인의 권리 권리명
무수한 발명이 생성되는 문제가 있다.



4) 가령법 (제5호 4항)

- ① 21년 10월 19일 제5호 4항은 신설해서
- ② 분할권 가진 자는 권리가. 제5호의 원권 주장
한정 그 분할 권리에 대해서 원권 주장권
점으로 보았다.

3) 사안

1) 22년 1월 20일 원권 주장 권법

- ① 22년 1월 20일. 분할권(21년 8월 25일)은
가장 먼저 원권 주장권이고 ② 분할권 없다

2) 분할권 A 원권 주장권 - 작곡 ^권

- ① 24년 3월 6일. 원권 주장권 유체로 된 가장
분할권 A권이다 ② 제5호 4항에 의해 원권
주장권 주장권

3) 분할권 B의 원권 주장권 - 작곡

- ① 24년 4월 25일. 분할권 A는 가장
분할권 권리 ② 제5호 4항에 의해 분할권
A는 원권 주장권 주장권 ③ 안정해 분할권
B도 원권 주장권 주장권.

4. 분할권

- ① 분할권 B는 원권 주장권 안정받을 수 있다.
- ② 제5호 4항은 권리가 된다.

5
I. 선행(2)

1. 무효사실 (제 17조)의 취

공정 거래 있는 권리도 소멸시키는 제문이다

2. 무효사실 취정조 (제 17조 3항)

무효사실 취정 조항이 특허권의 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미응답으로 청구부

1) 제 1항 취정 취

무효사실이 취정 조항이다. 심사제약이 취정 조항이 소멸시키는 특허권의 소멸과 별개로 보아야 한다.

2) 권리 취정

실시권은 본 취정 조항이 존재하는 동안 특허권자의 권리행사 금지이고 제 17조 3항은 본권을 잃으므로, 특허권은 소멸할 가능성이 있어서 특허권이 본권 취득된 때부터 심사제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있으므로 보아야 한다

(3) 실시권 청구부

1) 심사제약이 발생하여 이행 불능이므로 제 17조 3항은 본권이 존재하는 동안에



상충해 개인 혹은 마중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따기름 안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이미 등록된 실용신안 형식권은 본질적 표준
 있다.

(4) 사. - 실용의 개념.

① 무는 무슨 실용을 지칭할 때부터 실시제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들어온다 ② 그에 실시제약이 유효한 개인
 중인의 마중 실시로 인한 구할 수 있다.

[문제 3]

1. 실용(1)

1) 특허청구 - 권리남용

2) 권리남용 - 권리

① 특허권의 용이 무리 특허제출의 정당하게 행한 경우
 특허권은 부속은 갈라서서 쓰면 안된다. 진주사기
 실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② 가대근원
 자유로운 유통은 위하다 ③ 저작권의 권리 범주 규정
 없다. 위해가 인정된다.

2) 방법발명 소원 취제

① 특허권자 권리 방법발명은 실질적인 구제권 원은
 정당하게 안고 있는 경우 특허권은 부속은 갈라서서 소원
 권은 진주사기 2부 문건은 사용해서 방법발명

(1) 심사관 경우 특허권 존속시키지 않음.

(3) 권리 확대

특허법상 권리 제 방법방법에 대하여는 권리권은 인정하지 않은 근거가 있고, 특허권 제후는 특허권 제후는 특허권 제후를 위하여 법 제후에 방법방법에 있어 다른 적용되지 않은 경우 특허권 존속 청구에 방법방법은 삽입하여 특허권 제후에 대해 권리가므로 방법방법에 대하여 인정해야 함.

2. 그중상권 존속 - 방법방법을 실질 관련된 권리 확대

(1) 권리의 존속 방법방법의 실시본 개 존속 여부에 (2) 방법방법의 기술적 사상의 확장적 권익 이어나 해의 (3) 그 방법은 사후권 공정이 방법 방법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려 함.

3. 그중상의 타당성 - 타당

(1) 타당 실시권 그 후의 이면 통제는 권리에 사후권 (2) 이면 통제는 방법방법의 실시본에 관련된 권리임으로 (3) 특허권 소권제 특허권 존속시키지 않음 (4) 타당 그중상권

II 섹션 (2)

1. 국제적 소원

소원인의 국적법규는 국제법규는 별다른 경우가 없다

2. 국제적 소원 인정 여부

1) 취체의 테크

- ① ~~취체~~ 취체는 국제소원이 제기된 후까지 인정된다
- ② ~~취체~~ 취체에서는 국제적 소원 인정된 경우 있다

2) 장로

- ① 장로에 소원인의 취체인 소원과 관련된 유한 개인적인 취체가 인정되고 취체
- ② 취체가 인정된 경우 인정되어 인정된다.

3. 소원의 취체

- ① 소원인의 취체는 취체가 인정된 경우 인정된다
- ② 취체가 인정된 경우 인정된다
- ③ 취체가 인정된 경우 인정된다
- ④ 취체가 인정된 경우 인정된다

II 섹션 (3)

1. 판권 위조

(1) 판권지 재권 위조

실용 사안에 판권지 재권 약정 위반 시 고려한
사정요인을 이미 부각된 실용사 부재판례지의
양적으로 분석.

(2) 판권 위조 - 통상적 행위

통상적 행위로 그 재권에 따라 법위가 정해지므로
그 법위로 남은 경우 허락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부득적 권 위반사안 안출되는
경우에는 침해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2. 섹션의 개편

- ① 기존 제권에 근거에 합치했으나 ② 제 권에서
새권 통상적의 불이익 미취의 양으로 ③ 기대연결
재유류 통치해 되고 ④ 특히 권리 내의 침해로서 양으로
⑤ ⑥의 새권 통상적 권에 사용행위에 부득적
침해 미취 양으로

II 섹션 (4)

1. 권리 변동행위

이권제결 기준. 새권 통상적 (정호출) 실시 승인



각업권제이든 아님 관업권제 권속권제

(2) 관업권제 (제 29조)

무제제정권 특신성 권속권제 이거슨. 각업권제
개연성 높은 행위로 권제로 의제 된다.

(3) 방법발명의 경우 (제 29조 2항)

방법발명 산출물 시장 물건 생산, 행로
중의 행위하는 것은 발명권

(4) 중상권 속권설

① 각업권제인 관제제 권속설 ② 관제제에 관한
권속설 없음 ③ 특허권을 병립하게 함.

④ 특허권에 각업권제 개연성 높은 경우 관업
권제로 보아야 함

(5) 내제제 관제제 위계

관제제인 특허제임으로 관제제 권속권은 제 29
조 2항 2호는 행위로 관업권제인 보려면 특허권이
부당하게 취득되고 관제제에 부당히 제 29조 2항 2
호는, 특허권자의 이익이 세로게 관제권제인
보아야 하므로 관업권제 제정 하지 않음

(6) 결론

① 관제제 2항 2호 관업권제인 행위는 ② 관제제인 2항 2호
외로 보임 ③ 관업권제로 보려면 특허권 부당 취득중의
사정있어 ④ 관업권제 이거슨.



2. 그의 권리 시변 행위

1) 권리

권리를 제3자에게 ^{표시} 표의적으로 승인받은 권리는
 침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3자에게 ~~권~~ 제3자의
 손익에 침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시변.

① 그는 권리 시변 행위 ② 본인의 명의로 양도한 권리
 침해 ③ 이는 ~~권~~ 표의적으로 승인받은 권리로
 ④ 침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3. 무효의 기판 - 실의 기판.

본의 그는 실의 기판은 존속권과 ~~행~~ 행은 모두
무효이다.

[문제 4]

1) 문제 4)

1. 청구권(채권) 취득

청구권은 유채권과 같은 채권은 기판의 대상
 되지 않으나 청구권(채권) 취득의 권리관계
 명세서 같은 기판에 의해 채권취득은 ~~취득~~ 취득
 할 수 있다.

2. 특허 청구항

- ① 각각 제 1항에 따른 권리이며 본 발명은 제 1항에
- ② 부속된 청구항과의 관계에 따라 권리범위 속하고
- ③ 부속된 청구항의 다른 경우에는 본 발명은 권리
- 범위 속하는 청구항으로 본다. ④ 따라서 권리범위와

3. 선택의

1. PBP 발명인지.

특허 청구항 1은 PBP이 기재된 것으로 인정되나
 제 2항이 기재된 문헌발명인 PBP 청구항과

2. 종속항인지 청구항 여부.

(1) 종속 항의

제 2항이 의해 청구항으로 권리를 정리 있는
 큰 나의 권리 범위 내에

(2) 종속항이 아닌 항의

제 2항은 항을 형성하는 수단이 본 발 명에
 제 2항이 의해 청구 항으로 특정 항 내에 있는
사실 관계 상 의 특정 항 내에
있는 청구 항의 제 2항 제 1항 내에 있는
항에 의해 특정 항 내에 있는 항 내에
있는 항 내에 있는 항 내에 있는 항 내에

(3) 권리

상속권에 부여할 수 있는 본연의 물건 및 이익에 해당되는
수익으로서 본연의 권리행사에 의해 수익이

3. 그의 창유

(1) 권유(제29조 2항)의 취지

상속권은 본연의 상속재산 상속인으로서 권리 행
할 수 있어야 한다.

(2) 그의 창유

① 상속권은 상속인이 상속재산 그 권리의
처리를 할 수 있는 ② 상속인 B는 권리는
변경할 수 있다 중요의 가치에서 제외 ③ 부의
창유는 권유한다 ④ 재산 부를 전한다.

35

(3) 권리

상속(제29조 1항)의 취지

상속은 본연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상속인
한다.

2. 상속권 침해행위 제외

(1) 중요의

본연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상속인



권리권고

1) 대제 통역

구체적 실시예가 가능한 물건이다

2) 권리범위

기원적 권의 물건과 * 위치의 그 물건
관련된다

3) 범위권

권리가 변경된 경우 구체적 또는 특정 구체적
범위의 권리권리의 위치에서 변경에 해당
하여 작용한다 이 새로운 물건 변경하여
같은 대상에 대한 경우 관련된다.

3. 2의 청구대위

- ① 청구권 주체 신항문인 는 권리가 대위권
사실행위로 채워진다 ② 이채는 청구의
권리 새로운 권리행위인 미세한 차이이다
- ③ 제의와 같은 것은 제외되어 ④ 물권 주체이다

이치여백